

**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** (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)

구 분	건축공정 (공사진척도)	공 사 진 척 내 용	
		5층 이상 시설	5층 미만 시설
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	10% 이상	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사가 완성된 때	벽돌쌓기 공사의 ½ 이 상이 완성된 때
기 타	20% 이상	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사가 완성된 때	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때

비고 : 입소한 자료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(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)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